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8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의자 : 박수영 · 서천호 · 김재섭
서일준 · 김상훈 · 곽규택
최은석 · 임이자 · 이성권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

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혼성주류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본문 중 “제4호가목”을 “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4호다목”을 “제5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4호나목”을 “제5호나목”으로 한다.

4. 혼성주류: 100분의 30

별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혼성주류: 제3호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성주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주류의 종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혼성주류</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기타 주류 가. 별표 <u>제4호가목</u> 및 다목 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 0분의 72. 다만, 별표 <u>제4호다목</u> 의 주류 중 불휘발 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세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혼성주류: 100분의 30</u> 5. ----- 가. ----- <u>제5호가목</u> ----- ----- -----. ----- <u>제5호다목</u> ----- ----- -----.
나. 별표 <u>제4호나목</u> 의 주류: 100분의 30 ② · ③ (생 략)	나. ----- <u>제5호나목</u> ----- ----- ② · ③ (현행과 같음)